

# 『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』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2년 6월 25일

나. 발 의 자 : 김상조, 권기만, 김수민, 김익수, 김춘남, 박세진,  
손홍섭, 윤영철, 이명희, 정하영, 황경환 (11인)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6월 28일

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 상 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과 경로  
효친 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, 일자리, 노인  
관계기관, 효도수당, 장수수당 지원 등 구체적인 노인복지사업을  
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지원 대상 (안 제1조 ~ 제4조)
  - 시장의 노인 사회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문화 증진의 책임 부여
-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등 (안 제5조 ~ 제7조)
  -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 등
  - 노인복지시설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
-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(안 제8조 ~ 제13조)
  - 일자리사업 계획 및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
- 경로당 운영 및 지원 (안 제14조 ~ 제17조)
  -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지도감독
  -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
- 노인관계기관 지원 (안 제18조 ~ 제22조)
  - 노인관계기관(노인회 및 노인봉사단체 등)에 대한 지원 및 감독 등
- 효행장려 및 효 문화 증진 (안 제23조 ~ 제31조)
  - 효행교육의 장려 및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
  - 효도수당 지원 및 노인장수수당 지급 등
- 다른 조례의 폐지 (안 부칙 제2항)

## 라. 참고사항

- 「노인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,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성 수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, 평생 교육, 복지시설, 효 문화 증진, 효도수당, 노인 장수수당 지원 등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

### 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8조에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 발굴 및 지원으로 노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
- 안 제18조에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대한 사항과
- 안 제24조에 학생들에 대한 효행교육을 장려토록 하고 경로의 달에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26조에 4세대 이상 효도가정에 대해 월 5만원의 효도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,
- 안 제 27조에 95세 이상 노인에게 연 2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원

## 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, 효도수당 상향 조정 및 장수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지속적인 추가 비용을 수반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     략

5. 토    론    요    지 : 생     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     음

7. 심    사    결    과 : 원안가결